발간등록번호
11-1383000-000576-01

장애인 시설종사자를 위한

장애인 성폭력 예방교육 매뉴얼

기본편

여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장애인 시설종사자를 위한

장애인 성폭력 예방교육 매뉴얼

장애인 시설종사자를 위한
장애인 성폭력 예방교육 매뉴얼

수탁기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매뉴얼 개발 **배성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정미정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집필진 **배복주** 장애여성공감 대표
정은자 경원사회복지회 부설 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 소장

감수 **민병윤** 대전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
이현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발간등록번호 11-1383000-000576-01

발행일 2014년 12월
발행처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전화 02-2100-6000(代)
제작 인디엔피 www.indnp.com

* 매뉴얼의 내용은 집필진의 의견이며, 여성가족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 사전 승인 없이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여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기본편

펴내는 글

영화 '도가니'를 계기로 장애인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을 개정하거나 장애인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는 등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부족하며, 관련 사건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2013년 여성가족부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2008년 228건이던 장애인 대상 성폭력 발생 현황이 2012년에는 661건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물론 성폭력 예방교육이 확대되고 경각심도 높아져 신고가 증가한 탓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애인 성폭력 특성상 드러나지 않는 부분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 심각성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장애인 성폭력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및 사회적 공감대 확산 등 지속적인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본 매뉴얼은 장애인 성폭력 예방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장애인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주변인의 인식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장애인 거주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개발하였습니다. 장애인 성폭력 매뉴얼 제작을 위하여 장애인 관련 시설종사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성폭력이 발생하였을 때 어떠한 조치와 지원을 해야 하는지도 궁금하지만 '장애인 성폭력'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지, 나아가 "장애인 성행동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며 무엇을 성폭력으로 보아야 하는가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본 매뉴얼은 장애인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부모 및 교사 뿐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서 이들을 지원하고 관계를 맺는 종사자들에게 초점을 두었습니다. 장애인 시설종사자는 누구보다 장애인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고, 가까이서 많은 영향을 주는 존재입니다. 시설종사자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장애인을 지원하느냐에 따라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통념을 없앨 수 있고, 나아가 장애인에게 적절한 도움을 주어 성폭력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관련된 개념을 분명히 알고 장애인 인권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실천들이 장애인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을 것 입니다.

본 매뉴얼의 구성

기본편 **주 요 내 용** :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장애인의 성적자기결정권 등 장애인 성폭력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
주요활용대상 : 부모, 교사를 포함하는 일반국민 모두

실천편 **주 요 내 용** :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인식개선, 감수성 키우기 훈련 등 장애인 성폭력의 특성을 더욱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
특히 시설 내 장애인의 성행동에 관한 다양한 사례들의 해석과 성폭력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실천들을 다채롭게 다루고 있음
주요활용대상 : 일반국민 및 장애인 시설종사자

본 매뉴얼의 활용방법

- 본 매뉴얼은 장애인 시설종사자가 장애인 성폭력 예방에 대한 정보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 매뉴얼에서 다루고자 하는 성폭력 예방의 중점대상은 시설에 거주하는 지적장애 성인입니다.
- 본 매뉴얼은 장애인 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단계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기본편에 대한 이해를 선행한 후 실천편을 학습하시기를 권합니다.
-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장애인 성폭력 예방에 관한 실제적인 내용들을 알고 싶으신 분은 '실천편'을 중심으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 본 매뉴얼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주제별정보 – 교육정보 게시판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E-book으로 제작되어 모바일 상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CONTENTS

차례

Ⅰ.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

10 1. 지적 장애인에 대한 이해
14 2. 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이해

Ⅱ. 장애인의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이해

20 1. 자기결정권이란?
22 2. 장애인의 성적 권리

Ⅲ. 발달장애인의 성에 대한 이해

32 1. 발달장애인의 성에 대한 사회환경적 이해
39 2. 발달장애인의 성인식 및 태도
41 3. 장애인의 성에 대한 오해와 편견
45 4.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통념

Ⅳ. 발달장애인의 성에 관한 올바른 이해와 성폭력 예방

52 1. 장애인 거주시설의 특성을 이해하기
56 2. 거주시설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에 대한 이해
57 3. 거주시설종사자의 성인식이 거주인에게 미치는 영향
60 4. 거주인의 성적 욕망을 올바르게 바라보기

부록

66 * 장애인 바로 알기
72 * 일상생활에서의 장애인 성폭력 예방
73 * 지적 장애인 성폭력 피해 징후
74 * 장애인 시설종사자에게 물었습니다.
'장애인 성폭력 예방에 대해 무엇이 알고 싶은가요?'

장애인 시설종사자를 위한

장애인 성폭력 예방교육

매뉴얼 기본편

Ⅰ.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

1. 지적 장애인에 대한 이해
2. 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이해

1 지적 장애인에 대한 이해

1 지적 장애인의 정의

**지적 장애인은 장애등급 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개인이 처한 환경이나 학습지원의 방법, 가족관계 등
자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최근의 경향임**

국내 장애인복지법

지적 장애인은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장애 정도를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제1급 지능지수가 35미만인 사람으로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할에 적응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 동안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제2급 지능지수가 35이상 50미만인 사람으로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않고 특수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제3급 지능지수가 50이상 70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 · 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지적장애는 지능지수 70이하로 18세 이전에 적응행동의 결함이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 적응기능은 개인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일상생활의 요구에 대처하고 얼마나 독립적으로 삶을 영위하며, 공동체 기준에 따라 살 수 있는지를 나타낸다 (Hodapp & Dykens, 1996).

미국정신지체협회(AAMR)에서 지적 장애인을 판별하는 데 사용하는 적응행동기술의 범주

개념적 기술	사회적 기술	실제적 기술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읽기와 쓰기, 금전개념, 자기지시	대인관계, 책임감, 자존감, 속기 쉬움, 순진함, 규칙준수, 법준수, 희생피하기	• 식사하기, 옷입기, 이동하기, 용변보기 등과 같은 일상생활을 하기 위한 개인활동 • 식사준비하기, 약복용하기, 전화사용하기, 금전관리하기, 대중교통수단 이용하기, 가사노동 등과 같은 일상생활을 위한 도구를 다루는 활동 • 직업관련 기술 • 안전한 환경 유지하기

2 지적 장애인의 특성

지적 장애인은 개인의 특성 및 환경에 의해 장애 등급과는 다른 장애특성이 나타나기도 하므로 지적 장애인의 일반적인 특성을 이해하되, 개개인의 다양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적 장애인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성적 특성

지적 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교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모임이 없고, 모임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상대를 만날 기회는 극히 적다. 또한 성에 대한 정보 부족 혹은 잘못된 정보, 장애인 성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사회적 제약을 받는다. 특히 부모 및 시설관계자의 과잉보호 및 성행동의 무조건적 금지는 장애인의 성적활동을 부적절하게 할 뿐 아니라 자신의 성에 대해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스스로의 욕구를 적절하게 발산하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연습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지능력 및 학업성취

문제해결에 도달하는 관련요인을 선정하거나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모방학습, 우연학습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일반화시키거나, 다른 환경에서는 적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언어 의사소통

의사소통은 감정, 사고, 지각 등을 전달하는 과정으로 언어적 · 비언어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의사소통 능력은 언어학적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적 · 인지적 능력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적 장애인은 다른 사람들과 상호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사회적 · 정서적 특성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좋아하여 다른 사람에게 쉽게 다가가는 경향이 있지만 어떻게 상호작용해야 할지 몰라 친구 사귐에 제한적이고, 혼자 놀거나 자신보다 어린 사람들과 놀아서 종종 또래관계에 실패하게 된다. 또한 부모, 형제 자매, 또래, 교사 등 주변사람들로부터 비난 받은 경험으로 인해 누군가 관심을 보이면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채 친밀한 관계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고, 자기조절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대에게 집착하거나, 쉽게 동화되어 버린다.

2

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이해

1 자폐성 장애인의 정의

국내 장애인복지법

자폐성 장애인은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 · 신체표현 · 자기조절 · 사회적응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

제1급

ICD-10(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제2급

ICD-10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해나가기 어려운 사람

제3급

제2급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지능지수가 71이상이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해나기 위하여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미국정신의학회의 DSM-Ⅳ에 나타난 자폐성 발달장애의 진단기준

(1) · (2) · (3)에서 전체가 6개 이상 해당해야 한다. 이 때 적어도 (1)에서는 2개, (2) · (3)에서는 각각 1개 이상씩 해당되어야 한다.

(1) 사회적 상호작용의 질적인 결함

① 여러 가지 비언어적 행동(예를 들어 눈맞춤, 얼굴표정, 몸짓,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제스츄어)을 사용하는데 심한 결함이 있다.
② 발달수준에 적합한 또래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
③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기쁨 · 흥미 · 성취를 나누려고 하지 않는다. 즉, 관심 있는 것을 보여주거나 가져오거나 가리키지 않는다.
④ 사회적 혹은 정서적 상호교류적인 면이 부족하다.

(2) 의사소통의 결함

① 말이 늦거나 혹은 말을 거의 하지 못한다. 이 때 제스츄어나 몸 동작과 같이 말 이외의 다른 것으로 보상하려는 시도도 부족하다.
② 말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데 있어서 심한 결함을 보인다.
③ 반복하는 말을 사용하거나 혹은 의미 없는 이상한 말을 한다.
④ 발달수준에 적합하게 다양하고 자발적인 가상놀이 혹은 사회적 모방놀이를 하지 못한다.

(3) 제한되고 반복적이며, 상동증적인 행동 · 관심 · 활동들

① 고집스럽거나 지나치게 한 두 가지 제한된 면에 관심을 갖는다.
② 특정한, 불합리한 일상이나 의식에 집착한다.
③ 상동증 행동, 이상한 자세들(예로 손이나 손가락을 흔들거나 꼬는 행동 등)
④ 물건의 일부분에 집착한다.

※ 적어도 3세 이전에 다음 세 가지 영역 즉, (1) 사회적 상호작용, (2) 사회적인 의사소통에 사용되는 언어, (3) 상징 혹은 상상놀이에서 지연이나 기능이상이 발생해야 한다.

2 자폐성 장애인의 분류와 특성

자폐성 발달장애는 '여러 분야에서 장애가 나타나고 특히,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의사소통 기술에 심각한 제한이 있으며, 상동적인 행동 · 관심 및 활동을 나타내어 학습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자'로 정의되며, 하위범주를 '자폐성 장애', '레트 장애(Rett's Disorder)', '아스퍼거 장애(Asperger's Disorder)', '소아기 붕괴성 장애',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전반적 발달장애'로 분류된다.

자폐성 발달장애 하위범주 분류기준

자폐성 장애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이 현저하게 비정상적이거나 발달이 지체되어 있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이며 상동적인 행동이나 관심, 활동을 나타내어 학습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자

레트 장애

정상적인 출생과 출생 이후 5개월 동안 정상적인 발달을 하다가 그 이후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이 현저하게 비정상적이거나 발달이 지체되고, 상동적인 행동이나 관심, 활동을 나타내어 학습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자

아스퍼거 장애

언어발달의 지체는 나타나지 않으나 사회적 상호작용이 현저하게 비정상적인 특징을 나타내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이나, 관심, 활동을 나타내어 학습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자

소아기 붕괴성 장애

출생 이후 2년 동안 정상발달이 이루어진 후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이 현저하게 비정상적이 되고, 상동적인 행동이나 관심, 활동을 나타내어 학습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자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전반적 발달장애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이 현저하게 비정상적이거나 발달이 지체되어 있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이며 상동적인 행동이나 관심, 활동을 나타내나, 자폐성의 증상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습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자

간질

간질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장애인 시설종사자를 위한

장애인 성폭력 예방교육

매뉴얼 기본편

Ⅱ.
장애인의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이해

1. 자기결정권이란?
2. 장애인의 성적 권리

1 자기결정권이란?

1 자기결정권의 의미

헌법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 헌법에 대한 해석도 함께 변화되어 그 권리도 확대되어 왔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다. 이에 국민은 생명권, 초상권, 명예권과 같은 인격권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으로서의 휴식권과 문화향유권을 보장받게 되며, 이 행복추구권에서 자기 운명 결정권,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자기 책임의 원리 등이 나온다.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로서의 자기결정권이란 개인이 자신의 삶에 관한 중대한 사항에 대해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권리로서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 성적자기결정권을 포함하고 있다. 본인의 의사에 반대되는 개입을 국가가 하려고 하는 경우 엄격한 정당화가 필요하다. 또한 본인의 이익을 해치는 자기결정이 무엇인지, 그것을 과연 타인이 정당하게 판단할 수 있는지 끊임없이 의심하고 점검해야 한다.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시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장애인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는 것이 장애인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더라도, 그러한 개입은 신중해야 하며 정해진 절차와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개입에 대해서 당사자나 주변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잘못된 개입으로 인하여 장애인이 권리를 침해당했다면, 시설종사자와 주변인 등 사회구성원이 함께 책임을 맡는 것이 필요하다.

2 장애와 자기결정권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현실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발달장애인은 상호 작용이 쉽지 않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서 자기결정에 따른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장애 특성으로 인한 사회적인 제약이 있다면 그것은 장애인이 감내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그에 대한 합리적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기본적인 권리로서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하는 것(신체에 대한 결정권, 교육권, 노동권, 행복추구권, 자유권 등)에 대해서 장애인이 제한을 받고 있다면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더욱이 장애인은 역사적으로, 구조적으로 누적된 차별의 결과로 교육과 정보제공을 받지 못해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어렵기도 하다. 단지 동등한 기회 제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맥락을 고려해서 차별적인 구조를 개선해나가야 한다. 2014. 성명진, '발달장애 아동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연구' 「장애아동인권연구」 제5권 제1호

2 장애인의 성적 권리

1 장애인의 몸과 성적 욕망

장애인의 성적 권리를 이야기할 때면 늘 나오는 이야기가 있다. 신체적인 움직임이 거의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우 성적 욕망이 있어도 이를 해결하기 어려워서 좌절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사람들은 신체적으로 중증장애를 가진 사람을 보면 '저런 몸으로 성관계가 가능할까?'라고 생각한다. 장애인의 몸이 성적욕망을 실천하기 불가능하다고 전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사회적으로 너무 강력해서 장애인 당사자들에게도 내면화되어 있다.

발달장애 여성 당사자가 출연하여 자신의 삶과
성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영화
'날 좀 존중해 줘' (페카 카자라이넨, 핀란드, 2010)의 스틸 컷
(이미지 출처 : 네이버 이미지)

개인의 성적인 욕망과 실천, 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생각보다 다양하다. 자신의 사회적, 경제적 위치도 성적 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며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 관계 안에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 자신이 호감을 가진 사람과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고 싶은 욕구 등이 복잡하게 섞여 있는 것이다.

물론 몸의 차이로 인한 불평등, 장애로 인한 움직임의 제약과 심리적인 위축감, 의사소통과 관계를 맺을 때의 어려움 등은 욕망을 실천하는 과정에 영향을 끼친

다. 하지만 성적 욕망의 실천이 신체적인 접촉을 통한 성적 행위(엄밀하게 얘기하면 파트너와의 성교)로만 이루어지는 것일까? 대화, 산책, 바라보기 등 일상적 경험의 공유를 통해서도 친밀감이 형성된다. 이런 친밀함은 욕망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큰 만족감을 느끼게 한다.

그래서 중증장애인의 몸이 성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것만을 강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보다 장애인의 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깨고 장애인이 자신이 원하는 삶과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차별과 소외가 발생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친밀함을 만들고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어떤 부정적인 경험을 갖게 되는지를 보다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장애인의 몸이 모두 다 같은 위치에 있고 같은 욕망을 가진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성적 행위와 관련하여 임신을 걱정하고 피임방법을 고민하게 되며, 장애여성 역시 성적 착취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안전하고 평등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권리, 스스로 상황을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전제들은 장애여성의 성적 욕망이 구성되고 표현되는 것에 영향을 미친다. 파트너와의 성적 행위를 통한 만족에 집착하는 것도 성적인 실천에 순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보다 좋은 것, 보다 능력 있는 것, 보다 정상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기준으로 성적인 실천 방식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섹슈얼리티와 장애

섹슈얼리티는 성적 욕망, 판타지, 실천, 제도, 규범 등을 아우르는 용어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회의 도덕관념과 상당히 연관된다.

섹슈얼리티와 관련된 다양한 질문들

- 몇 살부터 섹스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인가?
- 부모의 동의 없이 결혼이 가능한 나이는 몇 세부터인가?
- 언제부터 자율적인 의지로 섹스를 할 수 있는가?
- 어떤 대상과의 관계는 비난받을 만한가?
- 어떤 섹스가 불법이라고 규정할 것인가?
- 이러한 성적 욕망과 실천이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위와 같은 문제들은 사람에게 미리 주어져 있거나 결정된 조건이 아니며, 시대에 따라 이러한 규범과 문제는 변화해왔다. 그리고 현재에도 각자가 가진 종교적, 정치적 신념이나 정체성, 삶의 양식에 따라 다양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 입장에 따라서 동일한 상황이 누구에게는 불법으로, 다른 사람에게는 합법으로 여겨질 수 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지는 성적인 실천방식이 누군가에게는 비정상적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더 알아보기 ①

섹슈얼리티 안에 있는 차별과 낙인

장애인은 비장애인의 경험과 관점으로 만들어진 역사와 관행, 가치체계에서 차별이나 낙인을 경험한다. 장애인은 정상적이지 않은 신체적, 정신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고 동정을 받는다.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태어났을 때의 조건이나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장애를 갖는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특히나 섹슈얼리티를 둘러싼 차별과 낙인은 실제로 장애인의 삶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는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장애인이 가진 성적인 욕망을 인정하고, 성적인 실천을 해내가는 데 필요한 자원의 제공, 권리의 행사, 타인과의 관계 맺기 등에 세심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성적 욕망과 주체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들이 선택한 성적 정체성과 실천에 대해 편견과 낙인 없이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할 것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을 형성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떤 사람으로서 주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

이런 상황과 관련된 사회적 자원과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는가?

임신, 출산을 통해서 아이를 낳거나 파트너가 될 수 있는가?

더 알아보기 ②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

장애인을 성적인 무능력자 혹은 피해자로 인식하는 것은 성폭력을 예방하도록 돕기보다는 오히려 성폭력을 유지하는 데 강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성폭력은 신체적 구조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신체를 가진 이들을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어떤 방식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지와 관련된 문제이다. 언어장애, 시청각장애, 발달장애 등을 가진 장애인들은 언어적 ·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다른 방식으로 한다.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비장애인들은 '다름'을 '취약함'으로 만드는 힘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 모욕, 착취하는 방식이 성폭력으로 종종 발생되기도 한다. 이러한 폭력은 부부, 가족, 이웃 등 주변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한편 발달장애인은 성행동을 통제할 수 없는 '위험'한 존재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 적절한 의사소통훈련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하지만 "성에 눈을 떠서 이것저것 귀찮고 곤란한 일이 생길 바에는, 차라리 모르고 안전하게 사는 게 낫다."라는 생각은 여전히 강하다.

부모, 가족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의 이런 생각은 상당히 실질적인 행동의 통제를 가져올 수 있다. 이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의 방식이기도 하지만 성에 대한 특정한 관점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더 알아보기 ③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올바르게 바라보기

장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움직임들은 장애를 싸워서 극복해야 하는 문제적인 질병이 아니라, 자신이 타고난 혹은 살아가면서 영구적으로 갖게 된 몸의 조건으로 긍정해야 함을 이야기해왔다.

장애를 병적인 것으로 한정하면 장애에 대한 진단, 처치, 관리의 주도권이 의사를 비롯한 전문가에게 주어진다. 의료진들은 의학적인 모델 손상의 정도로 장애인을 분류하고, 가능하면 '정상인'에 가깝게 재활하고자 하는 것에만 집중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장애인에게 필요한 의료인은 장애를 평가하고 수정하고 심지어 그 과정에서 결정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아니다. 장애인이 가진 심신의 조건을 인정하면서도 좀 더 잘 살아나가기 위해서 어떠한 지원과 도움이 필요한지 제안하고, 장애인의 결정을 존중해서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의료진의 역할이 요구된다.

장애를 싸우거나 극복해서 없애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은 성적자기결정권과도 긴밀하게 연관된다. 인간 종의 개량을 위해서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고 부적격자를 골라내기 위해서 만들어어진 우생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장애인은 개량되어야 할 대상이 되고, 그 방법으로 장애인의 성적 권리가 특히나 제한된다. 역사적으로 장애인에게 강제로 불임시술을 하거나 장애여성에게 낙태를 권유하는 등 장애인의 임신이나 출산, 성관계 자체를 제한해 온 경우가 많다.

현재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성적 권리가 제한되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찾기 어렵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 주변인이나 장애인 스스로도 자신의 장애가 후대에 이어지는 것에 대한 공포나 죄책감이 있다. 이런 상황은 임신의 당사자인 장애여성에게 특히나 성적인 실천을 해나가는 데 장벽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성적인 향유와 만족을 얼마나, 어떻게 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제한하지 않고, 장애인이 이 사회에서 존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성적자기결정권이란

한 개인이 자기 자신의 성(섹슈얼리티)과 연관된 문제들에 관하여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

헌재 판례(1990.9.10)로 본 성적자기결정권

성행위 여부 및 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 "누구나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 등을 바탕으로 사회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독자적으로 성적 가치관을 확립하고, 이에 따라 사생활의 영역에서 자기 스스로 내린 성적 결정에 따라 자기책임하에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

(출처 : 형법상 성적자기결정권 개념에 대한 성찰, 형사법 연구, 2009)

장애인 시설종사자를 위한

장애인 성폭력 예방교육

매뉴얼 기본편

Ⅲ.

발달장애인의 성에 대한 이해

1. 발달장애인의 성에 대한 사회환경적 이해
2. 발달장애인의 성인식 및 태도
3. 장애인의 성에 대한 오해와 편견
4.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통념

1 발달장애인의 성에 대한 사회환경적 이해

1 '성적인 존재'라고 인식하는 것을 넘어서기

'성'이라는 것은 단지 '성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장애인의 성을 이야기할 때, '장애인은 무성적'이라는 생각이 편견이며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과 동시에 '장애인도 애인을 갖고 싶어 하고, 성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장애인의 성을 설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 성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여전히, 장애인이 성적인 욕망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것 자체를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성과 관련된 행동이나 표현 자체를 '문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 시설 안에 생활하면서 일상적으로 정해진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관계의 가능성이 없고 매일 같은 생활이 반복되어 시설 내의 생활에 대한 답답함이나 스트레스가 성적인 행동으로 표현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성’은 어떻게 이야기 되어야 할까?

성이라는 것의 사회적 의미는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느끼는지, 어떻게 보이고 싶어 하는지, 어떤 사람에게 끌리는지, 어떤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지, 친밀함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어 하는지, 누구에게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 싶어 하는지 등의 여러 가지 감정과 욕구,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에서 생활하는 발달장애인들의 ‘성적인 욕구를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지’를 단순히 ‘누구와 어떻게 성관계를 맺게 해야 하는가’로만 이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누군가는 실제로 성관계를 맺고 싶어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연애를 하고 싶어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가까운 친구와 관계를 맺으며 서로를 챙기고 보살핌을 받고 싶어 할 수도 있다.

2 친밀한 관계의 부족으로 인한 관계에 대한 욕구

많은 발달장애인들은 가정, 학교 등 일상적인 생활에서 친밀한 관계가 부족하거나 거의 없는 경우에 놓인다. 가족들과 생활한다고 할지라도 부모나 형제가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폭력과 통제로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과정은 가족들 간의 심리적인 거리를 만들게 되어, 발달장애인의 심리적인 불안감, 소외감이 증폭되기도 한다.

부모에게도 지적장애가 있는 경우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발달장애를 가진 자녀에게 충분한 정서적 안정이나 보살핌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가족 안에서 자신의 장애를 이해받지 못하고 보살핌을 받지 못한 발달장애인들은 문제적 상황이 발생한다고 해도 이를 설명하고 풀어나갈 언어와 힘을 갖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심리적인 고립감을 느끼게 된다.

인간의 삶에서 관계에 대한 욕구는 누구나 가지고 있으며, 발달장애인들도 나름의 방식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고자 한다. 다만 적절한 성교육이나 다양한 관계에 대한 경험이 없었기에 친밀한 관계를 맺고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늘 적절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친밀한 관계의 형성은 어떻게 다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청소년기에 학교생활을 통해 친구들을 만나고, 마음에 드는 친구에게 호감을 표현하거나 연애를 하기도 한다. 하지만 발달장애인은 학교 수업 내용을 따라가지 못하여 어려움이 생기거나, 본인의 장애와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좌절을 경험하기도 한다.

또한 또래 집단에 소속되거나 가까운 관계를 만들지 못하고 무시당하거나 놀림을 받으면서 자존감을 형성하는 것에도 큰 어려움을 가진다.

3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권리'를 고려한 성교육의 부재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아동 · 청소년기에 적절한 성교육을 받기가 어렵다. 대부분 성기중심, 생식 관련 정보 중심으로 성교육이 이루어지며, 이러한 상황에서 발달장애를 가진 아동 · 청소년들 역시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내용으로 성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 학교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달장애 아동 · 청소년 혹은 성인 대상의 성교육이 조금씩 시도되고 있지만, 형식적인 1회성 교육이나 집단교육의 형태로 일방적인 지식전달의 경향을 띠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교육이 진행되는 배경도 대부분 장애인의 권리를 고려하기 보다는, 발달장애인이 성폭력의 가해자가 되거나 피해자가 되는 상황을 막는 것에 그쳐 기본적인 접근에서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발달장애 여성에게는 가족이나 지역사회의 지원체계가 적절하지 않은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 여성의 관계에 대한 욕구, 성적인 욕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에 대비하는 경우가 많다. 무조건적인 금지주의나 보호주의로 지원을 하게 된다.

발달장애 남성들은 '사고를 칠까봐'와 같은 우려 때문에, 성에 대한 정보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판단하기도 한다. 또한 성과 관련된 내용을 최대한 차단해야 한다고 보거나 '과도한 성적인 욕구'를 순간적으로 해소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남성과는 다르게 여성의 경우에는 발달장애를 가진 경우 더더욱 성에 대해서 모르고 살거나 '안전하게' 살아야 한다는 전제의 교육들이 이뤄진다. 우리 사회는 발달장애인에게 성교육을 진행해온 경험 자체가 많지 않아서, 어떠한 언어와 방식으로 내용을 전달할지 알지 못하여 매우 피상적이거나 생물학적인 수준의 교육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식의 금지주의, 보호주의, 피상적이고 생물학적인 성교육은 결국 더욱 큰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

4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습득하는 것에 취약한 상황

성이나 관계에 대한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학습하기에는 그 한계가 너무 크다고 할 수 있다. 학교에서 진행되는 성교육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비장애인의 경우에는 삶에서 경험으로 알게 되는 부분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또래 집단이나 다양한 사람들과 서로를 존중하는 친밀하고 평등한 관계를 맺어본 경험이 많지 않은 발달장애인들은 나쁜 관계와 바람직한 관계를 판단하기 어렵다. 관계를 맺으며 의견충돌이 있거나 갈등이 생겼을 때, 이에 대한 경험이 없어 지원자들의 일방적인 지시를 받는 소통에 익숙해져 있거나 암묵적인 강요, 부추김에 취약해져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는 특히 어렸을 때부터 시설에서 생활한 경우 더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스스로 다양한 관계를 맺고, 그 관계에 맞는 적절한 표현을 하는 것은 학습이나 교육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습득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매우 한정된 사람들과 제한적이고 일방적인 관계를 맺어온 시설 거주인들은 이런 점에서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5 사생활을 존중받지 못하는 삶

성과 관련된 부분은 개인에게는 매우 사적인 내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때문에 장애인의 경우에도 사생활은 존중되어야 한다. 장애인의 주변인들은 장애인이 누군가에게 성적인 표현을 하거나 관련한 욕구를 드러내게 되면 아무렇지 않게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스스럼없이 이야기한다.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수는 있지만, 일상적으로 장애인의 성에 관한 이야기를 더욱 스스럼없이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일이다.

시설의 생활과 사생활 존중의 어려움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받기 어려운 시설의 경우 이런 문제는 더욱 심각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 자체가 직접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의 성인식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인지적인 취약함으로 인해 공적인 것, 사적인 것의 구분이 쉽지 않다. 그리고 전 생애적으로 개인적인 공간과 시간을 갖는 경험이 많지 않다. 이는 사생활을 갖기 어려운 시설에서 오랜 시간 생활할 경우 더 극대화된다. 사생활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개인적 성행동을 할 수 있는 독립적인 공간을 가질 수 없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거기에서 나아가 자신의 성적인 표현을 드러내는 것이나, 친밀한 관계를 맺고 만들어나가는 것이 어디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보여도 되는 것인지, 어떤 부분은 나 혼자만 알고 있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 구분하거나 판단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한다.

2 발달장애인의 성인식 및 태도

1 발달장애인 성을 바라보는 시선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되었을 당시 지체, 시각, 청각, 정신지체 등의 5개 장애유형이 정해졌지만 발달장애의 경우 당사자의 소리를 낼 수 없었다. 그들의 소리는 많은 시간이 흐른 후 부모, 교사, 시설관계자 등 보호하는 사람들에 의해 알려지게 된다. 그러나 보호자들 또한 발달장애인의 성에 대해서는 두려워하거나 불편해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보호자들에 의해 더욱 억압되었다.

발달장애인의 성에 대한 평가는 극단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무성적이거나, 심지어는 과도하게 남용적 존재로서 동물적 욕구를 지닌 존재로 인식되어져 왔다(Cornelius, Chipouras, Makas, & Daniels, 1982; Mitchell, 1985, 정진옥 재인용). 또한 성적인 문제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단순한 보호와 돌봄만 필요한 존재로 생각하게 되었다. 이성에 대한 관심과 성적 호기심을 보일 경우 당황스러워하며, 성적 충동을 통제할 수 없는 도착적 성관계를 추구한다고 여겼다.

발달장애인의 성적활동에 자연스럽게 반응하기보다는 무시와 억압, 더 나아가 처벌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이렇듯 발달장애인의 성을 바라보는 사회적 태도는 철저히 억압되어왔고, 성폭력 피해에 노출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2 성에 대한 발달장애인의 태도

발달장애 성인의 결혼관을 다룬 최근의 연구를 살펴보면, 발달장애 성인도 관계와 사랑에 대한 욕구가 많으며, 다른 사람들처럼 결혼을 원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정진옥, 2008). 청소년기 발달장애인을 만나면 교제에 대한 욕구가 높고, 스킨십을 원하고 있지만 마땅한 상대자를 만날 수 없으며, 그 상대자를 만나야 하는 시기 또한 보호자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방송매체나 또래관계 속에서 보이는 친밀한 관계의 욕구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

발달장애인의 성에 대한 태도

발달장애인의 성에 대한 태도는 양육되어 온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지역사회에서 양육되었는지, 시설에서 양육되었는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시설에서 양육되었을 경우, 공개적으로 애정을 표시하는 것과 같은 태도는 관대하게 넘어가지만 지역사회에서는 수용되지 않는다. 가정에서 양육된 경우 가족의 행동과 반응에 근거하여 태도를 발전시킨다. 발달장애인의 태도 형성에는 부모의 태도가 결정적이다. 또래보다는 주로 양육자의 성 인식과 같은 태도를 지닌다. 관계 맺기에 서툴기 때문에 보호자의 가치와 신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못한 채 보호자의 인식을 수용한다. 또 매체를 통한 정보를 얻어도 해석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중매체에서 이상적으로 그려진 성에 대한 이미지는 정상적이며, 자신들이 추구해야 할 것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TV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결혼한다면 '정상적인 사람'이 될 거라고 믿는 경우가 많다.

3 장애인의 성에 대한 오해와 편견

성인이 되어도 성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와 같다.

발달장애인은 성인이 되어도 생활연령은 무시된 채, 인지 기능만으로 판단하여 아동으로 생각하거나, 성이 없는 중성적인 인간으로 보고 성을 억압하고 부인한다. 그러나 발달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신체적 · 성적 · 생물학적 발달은 일관성 있게 발달한다. 사회적 편견이 발달장애인의 성을 억압하고 사회구성원으로써의 역할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발달장애인은 성적 능력이 없거나 성에 대해 지나치게 관심이 많다.

인간은 성적인 존재이고, 성적 능력이 있으며, 성적 능력은 개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개인차가 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성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성 욕구를 올바르게 표현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고, 사적 · 공적 공간을 구별하지 못한 성행동을 지나친 성욕으로 치부하는 것은 장애인이 성적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인식 때문이다.

발달장애인, 특히 지적 장애인은 반드시 지적장애 아이를 낳을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지적 장애 출산 확률은 한쪽 부모가 IQ70 이하면 15%, 양쪽 부모가 IQ70 이하면 40%이다(Reed. E.W & Reed S.C, 1965). 타 장애 유형에 비해 지적 장애인의 경우 지적 장애인을 낳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유전되지 않는 장애도 많이 있다.

발달장애인은 부모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다.

발달장애인이 부모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라는 편견 때문에 무성적 존재로 규정하거나, 불임시술, 결혼생활 제재 등 본인의 능력과 선택에 관계없이 부모 역할과 권리를 뺏는 것은 인간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부모역할은 부부관계, 경제적 측면, 주거문제, 양육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사회적 지원체계가 확보된다면 발달장애인도 충분히 부모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 특히 지적 장애인은 성범죄자이거나 변태가 많다.

발달장애인은 대인관계 미숙, 적절한 성적 행동을 할 기회의 부족, 표현능력의 제한 등으로 자신의 성적 행동을 적절히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변태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적절한 성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자신의 행동이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른 채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특히 공적 장소와 사적 장소를 구분하지 못한 채 자위를 할 경우 낙인은 더욱 심해지고, 성폭력 피해를 겪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발달장애인은 동성애자가 많다.

생활시설의 경우 남녀를 구분하여 보호한다. 그리고 성폭력은 남성이 여성을 상대로 한다는 인식 때문에 남녀 관계는 강한 통제를 하는 반면, 동성 간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소수자의 성을 터부시하는 편협한 시각에 의해 장애인은 동성애가 많다는 편견을 갖는다. 이성교제를 원하는 시설장애인들이 교제를 할 수 있는 환경과 기관 및 종사자들의 인식 점검이 필요하다. 이와 동시에 동성애적 성적 지향을 갖고 있는 발달장애인이 있다 할지라도 편견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동성애적 성적 욕구가 있는 것은 개인의 성향이다. 소수자의 성은 마땅히 사회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며,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성적 지향이 침해되지 않아야한다.

성교육을 실시하면 관련 정보에 자극 받아 성적인 경험을 하고자 할 것이다.

발달장애인의 성적 발달은 지능과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발달한다. 발달장애인은 어린아이 같아서 성적 행동을 그냥 두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다. 그러나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 및 행동이 반복적으로 진행될 수 있고 발달장애인에게 맞는 적절한 성교육이 필요하다.

발달장애인이 성교육을 통해 성에 대한 지식과 권리를 알게 되면 성적인 문제를 더 많이 일으킬 것이다.

자기 통제력이 부족한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성적 권리를 행사하게 될 경우 성욕을 통제하지 못해 원치 않는 임신을 하거나 성폭력을 가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억압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인간은 성적인 욕구가 있고, 욕구를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개인적 혹은 사회문화적 방안을 만들며 진화한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의 성에 대한 편견은 성적 발달을 돕기 위한 지식과 정보를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 문제행동으로 표출되고 그에 따라 편견은 재생산되는 악순환이 일어난다.

발달장애인에게 성 정보를 주면 인지능력이 부족해서 혼란만 가중할 것이다.

인지능력이 부족하여 성에 대한 정보를 적절하게 획득하고 처리하는 과정이 힘들기 때문에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는 견해이다. 그러나 이미 현실에서 방송매체 및 인터넷의 발달로 성교육을 통해서 얻는 정보보다 훨씬 많은 부적절한 성 정보를 얻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체계적, 지속적인 성교육은 유아기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4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통념

1 발달장애인은 성폭력 피해 사실에 대해 거짓말을 한다.

발달장애인은 인지기능의 저하로 시공간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상황을 인식하는 능력이 제한적이다. 또 표현능력이 부족하여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설명을 어려워한다. 이런 특성으로 성폭력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 수는 있다. 하지만 누군가를 해칠 목적으로 성폭력 상황을 꾸며낼 정도의 인지능력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성폭력 피해를 당한 발달장애인에게 문제가 있다.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편견 중에 하나가 성폭력을 피해자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다. 이는 성에 대한 남성 중심적 편견을 장애여성에게도 적용하는 것으로, 성폭력 가해를 정당화하는 것이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친밀한 관계 혹은 용돈, 음식, 좋아하는 물건 등으로 길들이기 과정이 진행될 경우 스스로 가해자를 찾아간 형태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성폭력은 가해자의 의도에 의해 발생한 피해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3 발달장애인은 성폭력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묻어두는 것이 오히려 회복에 도움이 된다.

성폭력 피해 발달장애인 중에는 성폭력을 연애로 착각하거나, 좋아서 한 것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성폭력 피해자로 보지 않고, 발달장애인의 문제로 보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자신에게 발생한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심리적, 정서적 반응 또한 늦게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해야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용당했음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여전히 친밀감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성적 행위를 허용할 경우 성폭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치료와 교육이 필요하다.

4 발달장애인 간에 일어난 성폭력은 모르고 한 행동이니까 그냥 이해해 주어야 한다.

발달장애인들 사이에도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은 채 성적 접촉이 있었다면 성폭력이다. 서로가 좋아서 한 행위라거나, 잘 모르는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성적 호기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행동을 한 경우 잘못된 표현이고, 행동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장애인 시설종사자를 위한

장애인 성폭력 예방교육

매뉴얼 기본편

Ⅳ.

발달장애인의 성에 관한 올바른 이해와 성폭력 예방

1. 장애인 거주시설의 특성을 이해하기
2. 거주시설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에 대한 이해
3. 거주시설종사자의 성인식이 거주인에게 미치는 영향
4. 거주인의 성적 욕망을 올바르게 바라보기

오래된 문제의식, 거주시설과 장애인의 성

장애인 거주시설에 생활하는 발달장애인의 '성'은 문제적인가? 오랫동안 우리는 거주시설의 발달장애인의 성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이야기를 주로 해왔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성'은 주로 폭력과 관련되거나 이른바 문제행동 중심으로 다루어져 왔다. 그래서 대부분 문제를 최소화하고 방지하기 위한 대책과 교육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거주시설 장애인의 섹슈얼리티 담론은 대부분 폭력예방, 성적 행동에 대한 금지와 통제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다. 반면에 당사자들의 욕구에 대해 질문하고 존중하거나 성적 행동이 가지는 의미, 시설 내에서 발달장애인 개인의 성적 실천이 어려운 이유 등에 대해 알고자 하는 시도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많은 시설종사자들은 발달장애인의 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많이 한다.

자위를 많이 한다.

동성 간 유사 성행위를 한다.

교제하는 이성커플이 섹스를 하는 것 같다.

임신 · 출산 · 결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선생님을 좋아한다고 노골적으로 표현한다.

장애 남성이 목욕을 할 때 발기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질문은 오랫동안 해오던 것이지만 간단하게 대답하는 것은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하다.

대부분의 시설은 성(sexuality)이라는 어려운 이슈를 회피하려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Craft and Brown, 1994). 발달장애인에게는 성적으로 '영원한 아이 같은' 혹은 '위험한' 사람이라는 편견이 따라다니고, 성적으로 무시되거나 격리된다. 이와 관련된 문제의식은 있어왔지만, 늘 비슷한 질문과 답이 반복된다.

그 속에서 정작 우리가 분석해야 할 환경적 요소와 주변인들의 역할에 대한 부분은 가려진다. 더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할 발달장애인을 바라보는 편견의 문제, 성에 대한 혐오의 문제가 묻히고 있는 상황은 안타까운 현실일 것이다.

이 고민들을 잘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거주시설이라는 생활공간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발달장애인의 성을 둘러싼 환경, 주변인들과의 역동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발달장애인의 성은 문제적이다.'라는 인식에서 탈피하여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함께 실천해야 할 과제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1 장애인 거주시설의 특성을 이해하기

**장기간 동일한 룸메이트와 공동생활을 하고,
오랫동안 종사자들로부터 지원이나
조력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경험을 하며
일상을 살아가고 있을까?**

성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발달장애인 일반이 동일한 경험을 공유할 것이라는 생각은 발달장애인이 경험하는 더 광범위한 삶의 경험들을 상상할 수 없도록 만든다. 따라서 거주시설에 생활하는 장애인의 성을 이해하려면 사생활과 사회생활의 경험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공간적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 발달장애인의 성을 단순한 생물학적 본능이나 장애로 인한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환경과의 작용 속에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1 발달장애인의 성적 욕망이 발현되기 어려운 환경적 특성

거주시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한 공간에 여러 명이 공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개인적 활동을 위한 기회나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것은 시설 내 발달장애인들의 성적 욕망 발현을 분명히 제한하는 요소이다. 따라서 생애 주기별, 개인적 특성별 욕망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어렵다. 욕구를 표현하는 적절한 방식이나, 성적 의사소통에 대해 교육을 받는 경우도 드물다.

그래서 어떤 이는 성에 대해 지나치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스스로 성에 대해 엄격히 금기하거나 성적인 존재로서의 자신을 부정하는 등 극단적인 형태를 보이기도 한다.

오랫동안 자신의 몸을 사생활 안에서 경험하지 못한 발달장애인에게 사적 공간, 공적 공간을 구분하여 신체 노출을 분별하고 행동하는 것은 쉽지 않다. 또한 성적인 행위를 하는 장소와 수위를 판단하는 기준을 학습하기 어렵다. 같이 사는 일상에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모습을 목격할 수밖에 없다. 그런 과정에서 영향을 주고 받으며, 서로의 부정적인 부분까지 학습하여 따라할 가능성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2 한정된 관계와 경험이 성적 의사소통과 관계맺음에 미치는 영향

거주시설은 보통 10년 이상, 많게는 20~30년 이상 함께 살아온 관계가 많다. 따라서 거주인 간의 관계는 오랫동안 살아온 혈연가족처럼 지나치게 친밀해져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의사소통이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종사자와도 오랫동안 맺어온 관계로 긴장감보다 익숙함이 더 커지게 된다. 이렇게 익숙한 관계라서, 부모 자식 같아서, 장애인은 어린아이 같아서 등의 이유로 용인되는 스킨십들은 성적 행위의 대상과 표현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긴 시간 생활시설에서 맺어온 관계일수록 서로 간에 지켜야 할 존중과 배려에 대한 원칙을 종사자들 스스로부터 만들고 지켜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거주인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교육과 사회활동의 경험의 부족

거주시설 장애인의 대부분은 제도권 교육에서 많은 소외와 배제를 경험하고 사회적 관계와 활동, 자원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들 대부분은 일반적인 사회적 경험을 할 기회를 갖지 못하거나, 제도 교육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학교 졸업 이후 시설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사회와 단절된다. 그나마 가지고 있던 학습 능력과 사회적 관계 형성 능력이 퇴보되는 상황이다. 사회생활, 노동 과정을 통한 삶 전체에서의 재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보와 학습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또 장애특성에 따른 교육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며 교류하는 방식을 장기적으로 익히는 것이 필요하지만 시설의 여건상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거주시설의 장애인은 다양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풍부한 경험을 하기 보다는, 한정적인 관계를 맺게 되고 주로 대중매체를 통해 관계를 맺는 방식을 학습하게 된다.

분명한 것은 발달장애인의 다수가 시설에 살며 지역사회와 분리되어 있지만 그들 역시 젠더적 상황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Simpson, 1994; McCarthy, 1999)는 것이다. 즉 다른 교육과 영향력이 없게 된다면 매체에서의 고정된 성역할, 남성 중심적인 성문화, 왜곡된 사랑의 표현 등을 그대로 학습 받게 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젠더(gender)는 사회 문화적 성으로 그 사회에서 구분되는 남성성(남성다움)과 여성성(여성다움)을 말한다.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말처럼 여성다움과 남성다움, 여성과 남성의 역할, 권력 등은 인간 본연의 자연적 질서나 고유불변의 특성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 특성에 따라 구성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젠더적 상황은 남성중심 사회에서 성별권력에 의한 여성억압, 성 역할의 고정화(여성과 남성의 할 일을 구분하는 것), 성별규범(성별에 따라 강요되는 일정한 행동양식) 등 젠더로 인해 구성된 사회문화적 배경을 말한다.

따라서 젠더적 상황에서 모든 사회 구성원은 영향을 받게 되며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역시 마찬가지다.

실제 현장에서 일하고 생활하는 시설종사자의 경우 더 많은 경험을 통해 이러한 상황을 보게 될 것이다. 이를 토대로 각자의 시설의 특성들을 정리해 보며, 거주인들에게 미칠 수 있는 긍 · 부정적인 영향력을 분석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과정을 통해 거주시설의 생활 모습과 문화 또한 함께 변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 할 수 있을 것이다.

2 거주시설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에 대한 이해

시설거주 장애인의 자기결정을 하는 과정은 개인적인 요인, 환경적 요인, 기회 제공에 따라 살펴볼 수 있다.

개인적 요인

성별, 연령, 지능에 따라 자기 결정수준에 차이가 있지만, 시설에 거주할 경우 거주시설의 환경적 요인이 자기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하고 있다.

환경적 요인

첫째, 시설의 물리적 특성에 따른 측면이다. 그룹홈이 대형생활시설에 비해 자기결정 수준이 높은데, 특히 Robertson 등(2001)은 소규모이며 일반가정과 유사한 외형일수록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 능력이 향상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원 가정이나 생활시설에 비해 그룹홈에 거주하는 성인 발달장애인들의 자기결정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 수준을 높이기 위해 거주환경은 더 작고, 더 독립적이고, 덜 구속적이어야 함을 많은 학자들은 강조한다.

둘째, 지원 서비스 특성에 따른 측면이다. 이 안에는 서비스 제공 인력과 기관의 운영철학, 정책 등이 포함된다. 기관의 철학 및 정책은 서비스 제공자의 태도뿐만 아니라 제공되는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 구성, 발달장애인의 활동 범위 및 기회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대부분의 실무자들은 기관의 원칙을 우선시하고, 발달장애인을 도움이 필요한 대상으로 취급하여 자기결정을 허용하지 않거나 과잉보호한다.

셋째, 기회–자기결정 수준을 예측할 수 있는 강력한 요인이다. 자기결정 수준을 촉진시키려면 선택과 결정 기회가 발달장애인의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인식시키는 과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일상에서 빈번하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적절한 지원과 기회가 제공된다면 발달장애인의 결정 수준을 높일 수 있고, 참여를 통한 삶의 조건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이 가능해질 것이다.

3
거주시설종사자의 성인식이 거주인에게 미치는 영향

1 시설종사자는 거주인들에게 역할모델이자, 보호자, 교사이며, 권익옹호자

앞서 살펴보았듯 발달장애인에게 주변인들의 성인식은 매우 중요하게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거주시설종사자의 성인식이 거주인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자신의 성인식이 어떤지 파악하고 거주인과의 관계에서 어떤 역동을 발생시키는지 분석하는 것은 중요하다.

시설종사자들은 발달장애인 거주인들에게 역할모델이자, 보호자, 교사이며 발달장애인의 권익옹호자들이다. 때문에 시설 내 발달장애인들은 종사자들이 드러내는 가치관에 따라 자신의 욕망을 조절한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발달장애 여성 중에 "나는 아무런 성적인 욕망이 없다." 혹은 " '짝'과 손잡는 행위까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이야기 안에서 어떤 직접적인 억압의 흔적, 욕구 불만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시설에서 허용되는 만큼의 행위와 시설종사자들의 가치관, 문화 등에 따라 자신의 욕망을 스스로 조절하고 맞추어 나가는데 익숙해진 것이다. 시설이라는 소규모 사회에서 형성된 성문화와 가치관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익숙해진 경우가 많다.

2 시설종사자들의 어려움

거주인들을 일상적으로 교육하고 상담하는 시설종사자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실제로 시설종사자들이 성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개입과 교육, 상담 등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종교단체에서 설립한 시설인 경우

많은 시설들이 특정 종교에 의해 설립되어있고, 때문에 종교적 신념이 시설 안의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시설 내부에 종교시설이 구축되어 있는 것은 물론, 거주인들은 종교의식을 하루의 일과로서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종사자의 종교적 신념도 강하며, 그렇지 않더라도 시설의 종교적 기조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 종교적 교리가 가지는 특정 성적 지향이나 성행위에 대한 견해는 시설에서 매우 중요하게 인식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부정적인 견해일 때 시설종사자와 발달장애인 간에 더욱 큰 갈등을 초래하며 성에 대한 열린 소통을 제한할 수 있다.

부모나 보호자의 성에 관한 인식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의 부모나 보호자는 성에 대해 많은 우려를 갖기 때문에 종사자들은 부모가 있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성과 관련하여 개입하기에 더욱 어려움을 겪는다. 부모들이 전문가집단보다 발달장애인의 성에 대해 받아들이기 더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유는 부모들의 경우 자녀들과의 감정적 결속력이 크고, 무엇보다 자녀의 성과 관련하여 훨씬 더 긴 안목을 가지고 보기 때문이다(Rose, 1990; McCarthy, 1999).

적절한 교육과 훈련의 부재

종사자들에게 발달장애인의 성에 관한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고, 다양한 역동을 일으키고 있는 생활자들의 성과 관련하여 시설차원의 합의나 소통구조 등이 없다. 종사자 개인의 특별한 노력이나 신념이 없다면 그들 역시 발달장애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잘못된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편견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상황이라면 발달장애인의 성적 주체성과 권리를 옹호하고 지지해야 하는 종사자들의 역할은 애초에 기대할 수도 없다.

발달장애인의 성에 관한 사회적 무지와 고정관념부터 깨는 것이 중요하다. 발달장애인 성과 관련한 인권적 지지자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훈련을 제공받아야 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시설종사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시설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마지막으로 종사자들의 처우와 노동환경의 문제이다.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시설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시설들은 대부분 지역사회와 고립되어 위치해 연계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렵다. 그리고 생활하는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 대비 종사자들의 수는 턱없이 적다. 때문에 종사자들은 생활자들의 신변처리나 안전 등 일상적인 부분에서부터 교육과 프로그램까지 많은 부분을 담당해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속에서 질 높고 개별화된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4 거주인의 성적 욕망 올바르게 바라보기

발달장애인은 무성적인 존재로 취급 받거나 요구 당해 왔다. 과거에는 발달장애인의 성적인 욕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단계였다. 최근에는 그 욕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단계이다. 그러나 서구에서나 우리나라에서 발달장애인의 성이 중요하게 부각되며 가장 먼저 관심을 끈 것은 아마도 '성적 욕구의 해소'인 듯하다. 성적 욕구를 먹거나 자는 행위들과 같은 생물학적 필요로만 볼 때, 성적인 것도 단순히 '해소'하면 되는 문제가 된다. 이런 식의 접근은 성 자체를 '문제적인 것'으로 보게 만들고, 일시적이고 즉각적인 해결책만을 요구한다. 성을 둘러싼 상황은 복잡하고, 시설에서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더 그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1 거주시설 내 성교육이 필요한 이유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집단화되어 살고 있는 거주시설의 발달장애인들은 생애주기에 맞는 교육이나 경험을 가지지 못한다. 성교육을 실시하더라도 아동청소년에서부터 중장년층까지 동시에 이루어지고 1, 2회성의 단기교육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상황이다보니 나이, 장애유형, 개개인의 경험에 따른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 발달장애인들은 자신이 경험하는 성적인 욕구, 감정을 설명하지 못하며, 다양한 관계 안에서의 자신의 선택이나 감정을 인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발달장애인들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 혹은 성적 욕망을 표현하는 적절한 방법을 찾지 못해 과도하게 집중하거나 아예 거리를 두는 경우도 있다.

때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성교육을 우려하기도 한다. 구체적인 내용이 성에 대한 정보가 없는 발달장애인을 오히려 자극시킨다는 우려다. 그러나 이것은 불필요한 자극이 아니라 내재되어 있는 성적 욕망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와 기회를 마련하는 과정으로 봐야할 것이다. 금기되어 있고 환영받지 못했던 성적 욕망에 대해서 긍정해 주고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소통하고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을 이야기할 때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성적 욕망은 발현될 것이다.

2 거주시설의 성적 규범의 영향

성은 관계적인 맥락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어서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성적욕망이 만들어지고 표현되는 것은 시설 내의 성적 규범과 가치관에 의해서이다. 거주시설의 성적 규율을 따르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사람들에겐 긍정적인 보상을 받거나 모범적인 사람으로 제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성적인 것을 발현하거나 경험한 이들에게는 '문란함', '성적으로 과잉된', '절제하지 못함' 등과 같은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것을 목격하기도 한다.

또한 일부 시설들의 경우 남녀 간 유사 '애인관계'를 허용하거나 '짝'을 맺어주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도 그들이 스스로 성행위의 결과를 책임질 수 없다는 전제하에 전반적인 성행위에 대해 일정한 수위로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다. 이렇듯 발달장애인의 성적 욕망은 본능적이고 통제 불가능한 것처럼 이야기되지만 대부분은 시설 안에서의 규범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3 발달장애 여성의 성적 욕망

발달장애 여성들은 통제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하기 때문에, 시설 내에 존재하는 젠더적 상황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 시설 내 발달장애 여성들이 권리를 가진 주체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어떤 변화와 대안들이 필요할까? 비슷한 정도의 장애와 환경, 주변인 등을 갖춘 발달장애인 그룹임에도, 성별에 따라 그들은 전혀 다른 성적 경험을 한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발달장애 여성들은 '자위'를 경험하지 못했거나 그것이 성적인 즐거움을 발현하는 방법인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발달장애 여성이 이해하는 성행위는 남성의 성기에 또 남성 성기가 여성 성기에 삽입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윤가현, 2002).

물론 성행위에 있어 여성의 표현이 제한적이고 남성 의존적으로 만들어지는 현상은 시설생활 발달장애 여성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시설이라는 특성상 성적인 것을 표현하고 발현할 다양한 기회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발달장애 여성들이 성적 즐거움의 발현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은 더욱 어렵다.

4 거주인의 성적 욕망에 대한 존중

성적 즐거움이란 성과 개인의 삶을 둘러싼 감정, 선택, 만족, 태도와 가치 등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것이며, 다양한 문화적 상황의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성적인 것과 관련된 혼란과 고통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개개인의 다양성과 문화적 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더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무조건적 억제와 금지를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고통을 가중시키는 상황을 만든다.

발달장애인은 전 생애적으로 자신의 성경험 혹은 성행동에 대해 스스로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갖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주변인(부모나 교사)들에 의해 그 선택과정과 결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규정당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지원자들은 우선적으로 당사자의 경험과 욕구에 귀를 기울여 상황을 해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모든 성적 행동을 문제행동으로 규정하지 않는 노력들을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 발달장애인을 둘러싼 성적 관계는 발달장애를 갖지 않는 사람들만큼 다양한 결이 있을 수 있으며, 끊임없이 자기결정에 대한 변화들이 만들어질 수 있음을 염두 할 필요가 있다.

발달장애인에게 놓여진 상황과 맥락을 고려한 판단들과 함께 적절한 성교육, 성에 관한 인식들이 만들어질 때, 결국 이것이 장애인 성폭력을 예방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장애인 시설종사자를 위한

장애인 성폭력 예방교육

매뉴얼 기본편

부록

* 장애인 바로 알기
* 일상생활에서의 성폭력 예방
* 지적 장애인 성폭력 피해 징후
* 장애인 시설종사자에게 물었습니다.
  '장애인 성폭력 예방에 대해 무엇이 알고 싶은가요?'

장애인 바로 알기

1. '장애'의 의미
2. 장애인에 대한 이해

1. ‘장애’의 의미

‘장애인’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장애’가 무엇인지 되짚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를 정의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3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거에는 주로 임상적 · 의료적 시각에서 장애를 정의하였으나, 이러한 시각이 장애를 한 개인의 문제로만 규정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장애의 정의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이어졌다.

최근 UN 등 국제적 논의는 장애의 임상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 환경적 측면에 주목하여 장애를 재정의하고,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사회 환경적 차원에서 장애의 문제를 바라보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사전적 의미 (국립국어원)

신체 기관이 본래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정신 능력에 결함이 있는 상태

임상적 · 의료적 정의

심리적, 생리적, 해부학적 구조나 기능의 손실 또는 비정상

사회환경적 정의

손상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거의 또는 아무런 고려도 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을 사회활동의 주류적 참여로부터 배제시키는, 당대 사회조직에 의한 불이익이나 활동의 제한

2. 장애인에 대한 이해

1 장애인복지법(제2조 장애인의 정의)

1항 "장애인"이란 신체적 ·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2항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3항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 · 정신적 · 정서적 · 언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말하는 '장애'는 '신체적 · 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 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뜻하고, '장애인'은 위와 같은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상 장애유형별 분류기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관련)

신체적 장애 외부신체기능 장애

지체	가.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한 손의 두 손가락 이상을 각각 제 1지골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다. 한 다리를 리스프랑(lisfranc) 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영속적인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한 손의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왜소증으로 인하여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사. 지체에 위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애 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뇌병변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에 기인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 또는 일상생활 동작 등에 제한을 받는 사람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 장애
시각	가. 나쁜 눈의 시력(만국식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2이하인 사람 나.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사람 다.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라. 두 눈의 시야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청각	가.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나.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다.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라. 평형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언어	음성 기능 또는 언어 기능에 영속적인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안면	안면 부위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신체적 장애 내부기관기능 장애

신장	신장의 기능 부전으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어 일상생활 활동에 현저한 제한을 받는 사람
심장	심장의 기능 부전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정도의 활동에도 호흡곤란 등의 장애가 있어 일상생활 활동에 현저한 제한을 받는 사람
호흡기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간장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장루 요루	배변기능이나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 또는 요루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간질	간질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정신적 장애

지적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의 적응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
자폐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의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
정신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의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현저한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

4 장애인권리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006년 12월 13일 **유엔총회 채택** ------- **한국 발표** 2009년

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장애인에 대하여 'disabled persons'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persons with disabilities'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disabled persons'이 '사람'보다는 '장애'를 강조한 것처럼 보여 한 인간으로서 개인의 능력에 장애가 있다는 의미로 오인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장애보다는 인격적인 존재인 개인을 강조하고, 하나 혹은 둘 이상 존재 할 수 있는 다양한 장애의 속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협약에서는 'persons with disabilities'를 사용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의 장애인 성폭력 예방

- 일상 속에서 장애인의 개인영역과 사생활을 존중함으로써 장애인 자신이 스스로의 경계를 지킬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다.
- 어떤 만남에서 자신이 정한 선(예를 들어 신체적인 허용선)에 너무 가까워지거나 '이상한' 느낌이 날 때 'No'라고 말하도록 지도한다.
- 보호를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배운다. 자기 자신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결정에 참여하여 스스로 결정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다.
- 장애인이 성적 경계 침해를 겪을 때 'No!'라고 말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다른 영역에서 자신만의 선을 정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법에 익숙해져야 한다. 일상의 많은 영역에서 스스로 결정하는 법을 연습하여야 한다.
- 장애인이 자긍심을 되찾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희망사항과 의견이 존중되는 것을 지속적으로 경험해야 한다.
- 의료 또는 보건, 위생 등을 위한 신체접촉에서도 장애인에게 자신에게 행해질 치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가능한 한 많은 결정에 직접 참여하게 함으로써 장애인에게 예방과 강건함을 체험 및 습득할 수 있게 한다. 신체접촉이 불가피한 치료 등을 받을 때 가능하다면 본인이 직접 남자 또는 여자 선생님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
- 항상 적절한 호칭을 사용한다. 지적 장애인에게 반말을 쓰는 경우가 많다. 존칭을 사용함으로써 지적장애 성인들에게 자신이 성인임을 인식시킬 수 있으며, 그 결과 더 쉽게 성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인식하게 되고 더 많은 책임을 지는 것도 배우게 되며 결정을 하는 능력도 제고된다.
- 장애인 보호자들에게도 이러한 친밀감, 존중과 경계에 대해 이야기 할 계기를 마련해준다.

이현혜, 민병윤, 정진옥(2012. 장애인 성폭력 예방교육 매뉴얼 개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지적 장애인 성폭력 피해 징후

아래와 같은 징후가 장애 여아와 장애 청소녀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피해 징후이다. 만약 이러한 증상이 눈에 띄게 많다고 생각되면 반드시 관심을 기울여 그 이유를 꼭 알아내도록 노력한다.

- 성기에 통증을 호소한다.
- 옆에 누군가가 없으면 혼자 잠을 자지 못한다.
- 뭔가 숨기는 듯 불안해 보인다.
- 갑자기 너무 많이 먹든지 아니면 식욕이 없어진다.(거식증, 폭식증)
- 갑자기 자위를 심하게 한다.
- 자주 배가 아프다거나 머리가 아프다고 한다.
- 이유 없이 화를 내고 불안해하며 신경이 예민해진다.
- 이전에 그렇지 않았는데 자주 우울해 보인다.
-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고 문을 꼭 잠궈 놓는다.
- 머리핀, 핸드폰 줄, 가방 등 못 보던 물건을 가지고 들어온다.
- 용돈이 없는 상황에서 과자, 사탕 등을 많이 사먹고 다닌다.
- TV에 나타나는 이성교제 및 성적 표현에 과도한 관심을 갖는다.
- 동네 할아버지나 아저씨 이야기를 부쩍 많이 한다.

장애인 시설종사자에게 물었습니다.

'장애인 성폭력 예방에 대해 무엇이 알고 싶은가요?'

장애인 시설종사자 대상 교육 수요도 조사 실시 결과

실시일 : 2014년 7월

조사인원 : 전국 장애인 시설종사자 약 30명

본 설문조사와 관련된 대처 방안 등의 내용은 [실천편]에 자세히 수록되어 있습니다.

질문1]
장애인 성폭력의 의미와 대처방법에 대한 질문

질문	응답	응답수
1. 장애인 성폭력의 의미와 대처방법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중복 응답 허용)	① 성폭력의 의미와 대처방법을 잘 알고 있다.(1위)	13
	② 간략한 피해자 지원 정보만을 알고 있다.(2위)	7
	③ 성폭력으로 의심되는 상황이 있어도, 확신하지 못하여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3위)	6
	④ 장애인 성폭력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0

■ 가장 많은 응답자가 잘 알고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간략한 피해자 지원 정보만을 알고 있다는 응답이 7명으로 전체의 70%는 성폭력의 대처방안을 잘 인식하고 있음.

■ 성폭력으로 의심되는 상황이 있어도 확신하지 못하여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응답한 사람이 23명 중 6명이었음. 장애인 성폭력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는 답변이 없는 것을 통해 시설종사자들이 기본적으로 성폭력의 개념 정도는 파악하고 있으나, 다만 실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성폭력의 성립기준을 잡고 대처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음.

질문2]
장애인의 성에 대해 궁금한 사항 질문

질문	응답	응답수
2. 장애인 성에 대해 다음의 항목에서 궁금하신 사항을 모두 선택해주세요. (*중복 응답 허용)	① 장애 유형별 이해와 장애인의 성(5위)	13
	② 장애인의 성적 행동 경계 짓기(2위)	18
	③ 장애인의 성적자기결정권(1위)	19
	④ 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특성과 사례(4위)	14
	⑤ 장애인 성폭력 사건 지원 및 대처방법(3위)	15
	⑥ 장애인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인식 개선 방법(4위)	14
	⑦ 장애인과 종사자 간의 건강한 관계 형성하기(5위)	13
	⑧ 기타(주관식 응답)	2

■ 장애인의 성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응답이 고르게 나타났으며, 시설종사자들은 장애인 성폭력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성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음.

■ 가장 궁금한 질문으로는 '장애인의 성적자기결정권'에 관한 내용으로,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음.

■ 2번 질문에 대한 기타 응답으로는 장애인 학생에 맞는 성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과 장애인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감정의 표현에 대한 대처 방법을 알고 싶다는 대답이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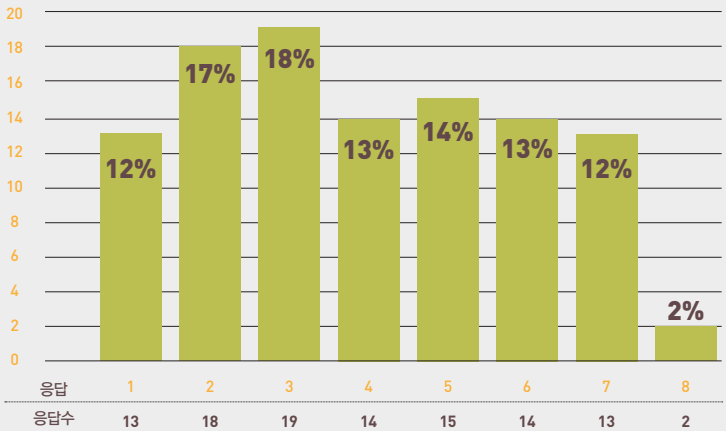

질문3]
시설종사자의 입장에서 장애인 성폭력에 대해 궁금한 사항

■ 3번 질문에 대한 주관식 응답을 유형화하면, '장애인의 성적 욕구를 바람직하게 해결하는 방법'과 '어떠한 범위까지가 성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성폭력(성희롱) 문제 발생 시 올바른 대처방안'에 대한 문의가 비슷한 수치로 나타남.

■ 장애인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성폭력'이라는 개념에 대한 인지가 없는 경우, 장애인이 원해서 성관계를 가진 경우 등 성폭력에 대해 판단하기 어렵거나, 해당 경우 시설종사자가 어디까지 개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았음.

■ 기타 답변으로는 다양한 장애 유형에 따른 제도적 지원과 성적 행동 및 유형에 대한 궁금증과, 시설종사자에 의한 성폭력 문제에 대한 문의, 시설종사자와 거주인(장애인)이 가져야 할 올바른 성의식에 대한 질문 등이 있었음.

질문3에 대한 주관식 답변 요약

질문 **시설에 종사하시면서, 장애인 성폭력에 대해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셨다면 무엇이든지 적극적으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응답

- 성폭력에 대한 부분보다는 성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알고 있는 자료들은 너무 많으나 이용인에게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
- 성폭력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 잘 알고 있으나,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부분 즉 시설에서 안전하게 장애인을 보호해야하는 부분과 자기결정권에 대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가
- 시설종사자로서, 사회복지사로서 장애인들의 성적 욕구를 어느 정도까지 허용해야 하는가
- 장애인이 시설의 방문자에게 성추행을 했을 시 대처 방법
- 문제를 제기하려고 해도 '장난'이라고 할 때 어느 정도까지 문제를 삼아야 하는가
- 이성 간 혹은 동성 간의 성적 문제가 발생하였지만 당사자 혹은 피해자가 그 의미도 모르고 의사표현도 잘 되지 않을 때 문제화와 해결이 너무 어려운 경우

- 성폭력 문제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격리가 어느 수준에서 되어야 하는가
- 시설 외의 장소로 격리 되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2차적인 피해에 대한 예방조치는 어디까지 관여가 가능한지
- 장애인도 성욕을 갖고 있으며 그것을 방출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일부 장애인은 이러한 성적 감정을 자의반 타의반으로 억압 상태에 두고 지내다가,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표현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러한 행동들이 알려져서 별도의 교육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들의 성적인 감정의 표출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또한 지적장애인의 경우 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들을 위해 성적인 욕구의 해소 방법은 없는지요? 권장할 만하고 양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저희 시설에서는 성폭력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궁금한 것은 저희 시설처럼 남녀가 다른 층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 그들이 적극적으로 만날 기회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각 층에서 생활하고 방만 따로 쓰게 한다든지, 아님 정기적으로 억지스런 만남은 아니더라도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시간들을 제공하는게 좋을까요? 혹시 이렇게 다른 층을 쓰도록 하는 것도 장애인의 성차별인가요?
- 동성의 종사자가 목욕 지원 시 혹은 의류 착 · 탈의 시 함부로 몸을 만지거나 손끝으로 튕기는 등의 부적절한 행동을 해 이를 목격한 타직원이 관련 내용을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적절한 조치 방법은 무엇인가요?
- 장애인의 성폭력 문제는 사법처리에 관한 문제와도 직결됩니다. 당사자의 증언을 사건 판결시 어느 정도 신뢰하는가와, 장애인 당사자, 시설종사자의 도움이 종합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성폭력 예방 매뉴얼 뿐 아니라 장애인들의 성폭력의 경계 및 성적 행동의 경계가 잘 구분되지 않아 장애인 특성에 맞는 성적 행동 및 유형에 대한 매뉴얼이 시급합니다.

- 단체생활에 있어 거주자 개인의 성적 욕구 해결 방안?

- 장애인들이 직원에게 스킨쉽(팔을 만짐, 등을 쓰다듬음 등)을 할 경우 단호히 거절해도 이해를 못하고 반복적인 행동을 할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의사결정능력(인지)이 전혀 없지만 무의식적인 성적 행동을 보일 경우 상대방이 호응을 할 경우 성폭력이 되는지요?

- 장애유형에 맞추어 제도적으로 지원되어야 하며 특성에 맞춰 다르게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종사자와 거주인 모두 올바른 성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성에 대해 인지가 있는 대상자가 성적 행동을 하기 위해 성에 대한 인지가 낮은 이성에게 성적 행동(유사성행위)을 하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자 담당교사의 눈을 피해 동성 대상자에게 성적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자위에 대해 교육을 하였으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외부프로그램 진행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자들만 바도 매우 흥분하는 상태이며 학교에서는 교사의 눈을 피해 화장실에서 동성의 대상자에게 성적 행동을 하였습니다.

- 이와 같이 서로 간의 동의 없이 개인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타인에게 성폭력을 가할 때 이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와 어떠한 대처방법이 좋을지가 궁금하며, 성폭력의 피해자가 자신이 성폭력을 당한 것에 대해 인지하지 못할 경우 이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문헌

2002. 윤가현. 「정신지체장애와 성」, 전남대학교

2003. 김한경 · 박용숙.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교육」, 나눔의 집

2005. 「공감」 8호, 장애여성공감

2006. 「장애여성공감 교육과정 자료집」, 장애여성공감

2007. 「정신지체 아동 성 바로 알기」, 경원사회복지회

2008. 정진옥. 「지적장애 성인이 이성교제에서 경험하는 성과 사랑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Dorothy M.Griffiths 외. 「윤리적 딜레마 : 성과 발달장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009. Leslie Walker-Hirsch. 「지적 장애인의 성교육 그리고 그 너머의 빛」, 시그마프레스

Eric J. Mash & David A.Wolfe. 「아동이상심리학」, 시그마프레스

장애인 생활시설 내 발달장애 여성 섹슈얼리티에 관한 토론회 자료집」, 장애여성공감

2010. Erik Bosch. 「지적 장애인의 성에 대한 이해와 성교육 지도』, 박학사

활동보조 인권지침서 「이것부터 시작해요!」, 장애여성공감

2011. 「발달장애 아동청소년 성교육 프로그램 발표회」, 장애여성공감

2012. 「장애인 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전문과정 자료집」,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복실. 「거주시설 성인 지적 장애인의 자기결정요인 연구 – 기회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민병로. '헌법상 자기결정권과 후견주의' 「법학연구」 제32권 제1호

「장애인 성폭력 · 성교육강사 양성과정 자료집」, 경원사회복지회

장애여성 독립생활 가이드북 「나의 독립찾기」, 장애여성공감

2013. 「장애여성운동, 15년 동안의 사고」, 장애여성공감

2014. 「공감」 12호, 장애여성공감

본 교육자료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기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센터 **대표 연락처** 02-3156-6013, 6130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사법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사법절차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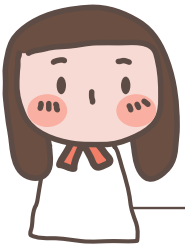

피해(의심)
장애인
발견

피해자가
피해 사실
발고

주변사람이
피해
의심, 인지

전문기관에
상담 및 문의, 신고의무
이행

* 112번, 1366번 또는
실천편 91p 전문기관
리스트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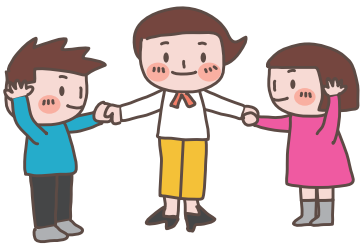

3심(상고) : 대법원
↑
2심(항소) : 고등법원
↑
1심 : 지방법원

기소

검찰
수사 후
처분

검찰 송치
(경찰 수사 후 담당형사
의견서, 사건 기록
서류 제출)

혐의없음
죄없음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각하
타기관이송
소년부송치

불기소

항고
↓
재항고

피해자, 보호자 상담

고소 안함

피해자, 가족 상담, 의료적 지원,
피해자 치료 및 회복프로그램,
쉼터 입소, 민사소송, 성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등

고소 결정(피해자, 보호자)

원스톱센터 진술녹화, 경찰 · 검찰에 고소(서면, 구두, 우편 등),
법률 조력인, 진술 조력인, 무료법률구조 신청

↓

고소인(피해자, 보호자) 조사

↓

수사, 증거수집, 참고인 조사

↓

피의자 소환조사

범죄 혐의 인정

귀가조치 소환수사

↑

불구속

구속

↓

구속영장 유치장 입감

혐의 없음

훈방조치

↓

사건종결

참고 : 법원행정처, 새로운 형사재판의 이해, 2007

장애인 시설종사자를 위한

장애인 성폭력 예방교육

매뉴얼

성폭력 예방의 시작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의 인식이
함께 변화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장애인과 가까이 관계를 맺고 있는
시설종사자, 부모, 다양한 지원자들에게 이는 더욱 필요하고
중요한 과정일 것입니다. 장애인을 그 자체로서 존중하고,
평등한 관계를 맺는 노력이 있어야만 성폭력을 근절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첫걸음, 장애인 시설종사자를 위한 [장애인 성폭력 예방교육 매뉴얼]이 함께합니다.

여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 PROMOTION AND EDUCATION